

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통보서

행정기관명

수신

(경유)

제목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통보서

1. 「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·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- 아 래 -

후견인				피후견인			
성명	생년월일	주소	직위	성명	생년월일	성별	보호시설

2. 보호시설의 장은 「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문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.

특별자치시장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접수일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 구분